

[ 요약본 ]

# 도산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발행일 : 2026. 4. 30.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설동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6. 4. 30. 「도산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요약본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위 연구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연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에는 각주와 참고문헌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본 요약본이 아니라 연구보고서의 해당 페이지를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jpri.scourt.go.kr>)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1장 서론

경기침체,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및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가계와 한계기업이 증가하면서,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 3.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접수 건수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도산사건 접수 건수 증가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도산제도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다양한 쟁점들이 표면화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윤리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산술적으로 그들 중 일부가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개인회생절차 악용 사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이기도 하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절차 진행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회생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사건과 달리 개인파산사건 접수 건수는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형편인바, 개인채무자들이 개인파산을 상대적으로 기피하고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도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이를 불성실의 징표 또

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취업 제한, 해고 등 ‘신분상 차별’ 및 신용거래 중단 등 ‘경제적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개인도산 절차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해고 등 차별적 취급이 가해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존재하는 각종 불이익이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법원 내외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연계와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은 2001. 8. 14.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효력상실·재입법을 반복하여 왔고, 현행 제7기 기촉법은 그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2023. 12. 26. 제정되었다. 현행 기촉법 제정 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다양한 법원 외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존재하므로, 법원의 적정한 관여하에 법원 내외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별 도산사건 처리기간 편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른바 ‘포럼 쇼핑’ 현상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채무자의 거주지·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우려되고, 특정

법원에 사건이 집중됨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도 상당하다. 따라서 도산사건 처리에 있어 법원별 업무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026. 3.경 대전·대구·광주에 각 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회생법원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검토가 더욱 긴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회생절차 자동개시의 필요성 및 효용에 관한 검토」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인해 채무자 회사의 재정상황이 대외적으로 공표됨에 따라 그 즉시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혼란 등이 초래되나, 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궁극적으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야만 비로소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도산절차 내적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이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각종 효력발생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단축’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그 시간적 간격을 원천적으로 ‘소거’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법원이 심사를 거쳐 따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그 즉시 자동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자동개시제도가 도입된다면,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시행(2006. 4. 1.) 20주년을 맞이하여 현행법상 회생절차가 효율적인지 여부, 특히 절차개시 등의 시점 및 방식이 최근 기대되고 있는 법원의 역할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 제2장 도산절차 일반론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유형’에 따라 법인도산과 개인도산으로, ‘절차의 목적’에 따라 재건형의 회생절차와 청산형의 파산절차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도산절차별로 전반적인 절차의 흐름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주요 개념 및 쟁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기하였다.

한편 도산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법인도산절차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존이 어려워진 기업을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시켜 위험의 확산을 차단하는 등 경제의 자연적 정화·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고, 그에 대한 도덕적·사회적 비난은 상당히 약한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① 기업의 실패는 시장경제에서 종종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바 그에 대해 신속한 사업정리 및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이 정신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② 기업의 실패는 경기 사이클, 산업 환경의 변동, 금리 정책 및 환율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사회 등 집단적 회의체를 통해 의사결정에 이르게 되는 법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산절차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지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인도산절차에 대해서는 개인인 채무자의 소비습관, 금융지식 부족, 무책임한 차입을 탓하는 등 상당한 도덕적·사회적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 재정적 파탄에 이른 채무자를 ‘경제적 죄인’ 등으로 낙인찍어 국가 복지정책의 객체로서 근근이 생계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는 시각 또한 아직 상당히 남아 있다. 그러나 ① 개인도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노동능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성화된 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월등히 유리한 점, ② 가계신용의 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도산 책임을 개인에게만 귀속시킬 수는 없는 점, ③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을 하기 어려울 것인데 대부분의 채무자는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인도산절차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도산절차에 대한 도덕적·사회적 비난은 과도하다.

### 제3장 개인회생절차의 윤리성 제고방안

최근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사건들 중 일부는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바, 개인회생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자·채권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인바, 위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필요 또한 있다.

우선, 개인회생절차 악용 사례들을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재산을 은닉한 다음 개인회생 등을 신청한 사례’, ‘수입료 지급 등을 위해 신청대리인 측을 통하여 대부회사 등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례’, ‘신청대리 수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개인회생채권 등에 포함시킨 사례’, ‘허위자료

제출’ 등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현행 악용방지 제도인 ‘채무자 등에 대한 심리·조사’ 및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들에는 모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①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와 관련하여 의도적 누락으로 판단 시 곧바로 기각(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하거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례들을 유형화하는 방안(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②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1호, 제595조 제2호), ③ 면책불허가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다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④ 부인권 행사명령 또는 청산가치 추가 반영 취지의 보정명령을 적극적으로 발령하는 방안, ⑤ 사기회생죄·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뒤 이를 초과하여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방안, ⑥ 면책취소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다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⑦ 신청대리 수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례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취급하여 처리하되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사기죄로 의율하는 방안, ⑧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체크리스트의 체크 항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확충하고, 주기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거나 제출할 사건이 없었음을 확인하도록 하며, ‘직권 면책취소 심리 촉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상 면책불허가 사유를 신설하는 최근의 개정법률안은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사이의 기능적 분업 구조를 무력화하고, 면책 단계에서 과도한 심리·조사가 요구됨에 따라 절차가 심각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위 개정법률안이 상정한 문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의 실무례로도 상당 부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그 대신 ① 면책 전 채무자교육 제도, ② 인가결정 이후 단계의 사건기록 검토에 관한 용역을 외부 전문가에게 발주하여 면책불허가·면책취소 사례를 탐색하도록 하는 방안 등 개인회생절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였다.

#### 제4장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현재 개인도산 채무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각종 신분상 차별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았다.

먼저 신분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 법률들을 ‘공무원의 결격사유’, ‘교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결격사유’, ‘전문자격 등록·취득 결격사유’, ‘직업·취업 결격사유’, ‘제조·판매 등 영업의 인·허가 등 결격사유’, ‘기관 설립·운영 결격사유’, ‘기타 자격·신분 결격사유’ 등 유형별로 나누어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도산 채무자에 대한 자격결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매우 폭넓게 포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결격사유 규정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① 임용이나 지위 유지에 있어서 매우 높은 공공

성과 신뢰성이 필요한 공무원, ② 그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교원, ③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커 고도의 신뢰성·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적 직위, ④ 거래상의 신뢰 또는 재산상의 신용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정 업무의 경우에는 결격사유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따라 각각의 구체적 맥락을 감안해 유지, 수정,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불이익과 관련하여, ①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개인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무려 5년이 경과되어야 신용정보(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되는 반면, ②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변제한 경우 신용정보(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③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절차에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도 확정된 신용회복채무를 1년 이상 변제 시 신용정보(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용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면 신용카드 사용, 대출(마이네스통장)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정보가 계약체결 여부 심사에 반영되는 각종 할부·리스·렌탈 상품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상품의 이용 또한 어려워진다. 나아가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한 채무자의 경우 개인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각종 정책서민금융상품조차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용관리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파산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공공정보)

등록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외에 개인도산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 자체를 감축하기 위해 ‘선면책 제도’의 활성화, 인가결정 이후 납입된 임치금에 기초하여서만 인가 후 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서의 ‘외부 회생위원 보수 체계 개편’ 등을 제안하였다.

### 제5장 법원 내외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연계와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현행 제7기 기촉법이 그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2023. 12. 26. 제정될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를 중심으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등 각종 법원 외 기업구조조정 절차들을 개관하여 본 뒤,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의 개편방안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기촉법 상시화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2023. 경까지는 기촉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나, 2023. 12.경 기촉법 일몰 연장 시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 부대의견을 계기로, 사전 인가 등 법원이 공동관리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는 외국의 기업구조조정제도를 토대로 경영권 유지,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 신규 자금지원 등을 골

자로 설계되었는바 외환위기 직후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현재 기업구조조정의 원칙적 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법인회생절차에 더하여, 고유한 장점과 특징을 지닌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가 병존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절차에 관한 선택지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촉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적자치 및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판을 통한 당사자의 권리 확정·변경을 본령으로 하는 법원이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에 직접 관여하여 사법적 심사를 진행하여야만, 다수결에 따라 반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를 변경·박탈하는 현행 기촉법의 규율 체계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고, 지난한 위헌성 논쟁 또한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관한 특례기간의 연장 여부 승인,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를 상당 부분 통제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 당국의 시선을 의식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내심의 의사에 반해 기업개선 계획 등에 관한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찬성하게 되거나, 반대하더라도 그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대채권 매수까지 청구하는 것은 주저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립적 헌법기관인 법원이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면, 금융감독 당국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차단함으로써 관치금융에 관한 우려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기축법상 공동관리절차에 ‘사전인가 제도를 통한 법원의 적극적 관여 방안’이 관철되는 것을 조건으로, 기축법 상시화에 찬성할 필요가 있다. 법원 인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축법 개정안을 함께 제시해보았다. 기축법에 관한 위헌성 및 관치금융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일하고도 효율적인 방안은 기축법상 공동관리 절차에 법원이 직접 관여하는 것인바, 단순히 법원 구조조정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축법의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해소하기에 명백히 부족하다.

다음으로 법원 내외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효율적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pre-ARS 제도」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선보였는바, 향후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선별하여 위 각 제도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들 간 선택·전환·연계를 위한 플랫폼(pre-ARS 제도) 내지 회생절차와 기축법상 공동관리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으로 각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제6장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모색

도산사건 처리에 관한 법원별 업무 편차가 심각하고, 이른바 ‘포럼 쇼핑’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바, 법원별 업무 편차의 현황을 ‘업무처리 기간’ 및 ‘업무처리 방식’의 측면에서 각 분석해보았다.

법원별 업무 편차의 발생 원인으로는 전문 인력의 편재(偏在), 도산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통일적 업무처리 기준의 유무, 절차관계인 선발 및 관리·교육

의 어려움, 절차관계인의 법원 간 인사 교류가 전무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나아가 ① 도산사건 처리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사전에 설정된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국 법원이 ‘최대한 신속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지향할 필요가 있는 점, ③ 도산절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달리 상급심에 의해 사후적으로 업무 통일성이 도모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신규 제도 도입 시 숙의를 거쳐 전국 법원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또 다른 ‘포럼 쇼핑’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다른 도산 재판부들과 사이에서 균질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업무 통일성 제고를 위한 기존의 조치사항들을 확인하여 본 뒤, 법원행정처 실무지원단이 도산사건 처리업무 통일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① (가칭)도산사법서비스 균질화에 관한 커뮤니티 신설, ② 도산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의 전입법관 오리엔테이션을 공유(그 영상을 촬영해 사법연수원의 도산실무 온라인 연수로 활용), ③ 전국 법원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처리 기준인(가칭)모범 실무례를 제정, ④ 각 법원별 도산사건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검토, ⑤ 관리위원 및 전입회생위원(외부) 재위촉 시 근무법원 이동 및 회생위원(내부)에 대한 타 법원 전보인사 등 각종 개선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논지를 전개해보았다.

점묘화를 구성하는 각각 점들의 색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그 점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조망하면 하나의 명화를 구성하고 있다. 도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개별적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나, 그러한 다양성 또한 전체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구제와 배려’라는 핵심 가치를 일치하여 지향하는 범위 내에서 구현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도산사법서비스의 균질화’는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거나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모든 개별 법관들의 자율적 협업의 산물로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담당 법관들 간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어질 필요가 있다.

## 제7장 회생절차 자동개시의 필요성 및 효용에 관한 검토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신청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절차 개시결정」 체계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인해 채무자 회사의 재정상황이 대외적으로 공표됨에 따라 그 즉시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혼란 등이 초래됨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궁극적으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야만 비로소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도산절차 내적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면서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이다.

신청 이후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법인회생 실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① 심층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극

히 소수에 불과한데도 모든 사건을 동일한 강도로 심리하고 있음에 따른 비효율성, ② 기계적으로 개시결정을 내리고 있음에 더해 그 개시결정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소거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부재함에 따른 법원의 재량권 약화, ③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발령 시점의 지연, ④ 법인회생 접수 이후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한 법원별 업무편차 심화, ⑤ 개시결정이 특별한 성과로 간주됨에 따른 변호사 보수 구조의 왜곡, ⑥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가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른 회생채권·공익채권 분별의 문제, ⑦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과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각종 도산절차 내적 효력 발생시점의 불일치, ⑧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에 계좌 입금된 자금을 대한 예대상계 주장 등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신청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절차 개시결정」 체계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점들이 식별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각종 효력발생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단축하여야 할 것인바, 서울회생법원을 필두로 당일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신속하게 발령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시간적 간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만약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그 즉시 자동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자동개시제도가 도입된다면,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개시제도 도입 시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①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서식의 정비, ②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접수 시 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간주, ③ 신청에 각하·기각사유가 내재되어 있었을 경우 회생절차 실효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사후적으로 종료, ④ 단기간 내 재신청 등의 경우 자동중지 효력의 적용 배제결정을 통한 규제, ⑤ 자동개시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취하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제8장 결론

생동하듯 발전하고 변화해 가는 도산제도에서 새로운 제도의 창안 및 도입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 제도들의 개선 내지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창조와 개선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규제와 배려’라는 도산제도의 핵심 가치가 보다 분명하게 구현되고, 도산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증진되어, 도산제도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제도로서 국민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